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	발주부서: 홍보팀	발주날짜: 2023. 11. 20.
	발주내용 : 2024년 캘린더, 다이어리 인쇄 제작 용역		<input type="checkbox"/> 공사 <input type="checkbox"/> 용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의계약 사유 : 다이어리 인쇄 제작 업무 수행 실적 보유, 제작 기간 확보를 위해 신속 추진 필요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대표자): 김현미	소속(업체명): (주)그린주의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010-4283-4524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A동 1층 R106호 신내동 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신내동)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대표이사, 배우자, 대표이사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의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서울특별시 소속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재단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중

계약상대자(대표자):



제9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표이사

2. 재단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법령상 담당하는 직원 :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즉,재무팀 계약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

3. 서울특별시 소속 고위공직자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장, 국제관계대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4.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재단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재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수익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